

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이사회 회의록

(2022학년도 제3회)

회의소집일자		2022. 5. 27.	
이사정수	8인	재적이사	8인

- 회의 일자 : 2022. 5. 31. 19:00
- 회의 장소 : 익산시 어양동 657-1 어양 영생당 한의원
- 참석 이사 : 조만석, 남건우, 강순옥, 김현중, 조정환, 이용희, 박용호, 한병수
- 불참 이사 : 없음
- 회의 안건 : 정관변경 심의
- 회의 내용 : 서기로부터 인원점검 후 성원보고를 마친다.

의 장: 성원됨으로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이사회 제3차 개회를 선언합니다. (서기 전회의록 낭독)
 방금 낭독해 드린 전회의록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 이 사: 없습니다. (만장일치)

의 장: 그러면 전회의록을 무수정 통과함을 선포합니다. 먼저 본 회의는 DiA세인학원 정관 제30조(이사회 소집)에 의거 이사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나, 수익사업체 개설과 초중등학교법 개정 등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이 있어 정관 제 30조 다만, “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” 라는 규정에 의거 전 이사 참석과 동의에 의한 회의 개최임을 알려드립니다.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

전 이 사: 없습니다.

의 장: 다음은 정관변경 건으로 초중등학교법 개정과 원활한 수익사업체 운영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 신규 대조표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법인정관 신.구대조표

현행	개정
제1조 (목적)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5차원 전면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실력 있는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5차원 전면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실력 있는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제32~35조의 사업을 개설 운영 한다. 1. 설치학교: 세인고등학교 2. 의료기관 개설 운영(익산시 하나로 418, 모현동 104)
제85조 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초.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31조 제 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·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제85조 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초.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31조 제 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·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제86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	제86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 32조 제1항 및 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

조만석

남건우

조정환

3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1. 학교규정의 제·개정
 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다만 특정서를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3.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4.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
 5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
 6. 학교회계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 32조 제 1항 제 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·수련 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- ③ 제 1항 제 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항을 심의한다.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.

1.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2.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
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
 4.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
 5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
 8. 학교급식
 9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
 10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 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12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 13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② 법 제 32조 제1항 제6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중 학생의 교육활동·수련 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- ③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. 제안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. 5. 31.일부터 시행한다.

남건우이사: 신·구 대표와 같이 정관을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조정환이사: 저도 남건우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.

강순옥이사: 재청합니다.

의 장: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.

전 이 사: 없습니다.(만장일치)

의 장: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정관을 신·구 대표와 같이 개정할 것을 선포합니다.

기타로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(이사 전원 “없습니다”)

간서명 위원으로 저와 조정환 이사님과 남건우 이사님으로 하고자 합니다. 이의 있으십니까?

전 이 사: 없습니다.

의 장: 이것으로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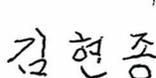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2022. 5. 31.

이 사 장: 조 만 석 

이 사: 이 용 희 

이 사: 한 병 수 

이 사: 김 현 중 

이 사: 남 건 우 

이 사: 강 순 옥 

이 사: 박 용 호 

이 사: 조 정 환 